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6년 11월 20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수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기금운용 심의에 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II. 주요골자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여성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으로 명시

III. 검토의견

- 2006. 1. 1.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 2005. 8. 4)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되 필요한 경우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해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바(법 제13조제1항·제2항),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자문기관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여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면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기금운용심의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이 미비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IV.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성과의 분석결과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있어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거쳐야 한다. (이하생략)

○ 현행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발전기본조례

제15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종로구여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여성정책 및 사회참여사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5. 기타 여성문제에 관한 사항